



# *Web Contents*



2024년 04월 26일 18시 11분



## 차종별검사주기

### 자동차 검사도래 SMS 안내신청

- ☐ [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\(http://www.kotsa.or.kr/\)](http://www.kotsa.or.kr/) / 교통안전공단 ☎1577-0990

구분	검사주기
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파견인 자동차	2년 (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)
사업용 승용자동차	1년(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)
경형·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	1년
사업용 대형화물 자동차	차령 2년 이하 : 1년
	차령 2년 초과 : 6월
그 밖의 자동차	차령 5년 이하 : 1년
	차령 5년 초과 : 6월

※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(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)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함.

## 종합검사 기간

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종합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검사

※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차량의 천재,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 신청하여야함.

- 신청서류 : 검사연장신청서, 자동차등록증, 입증서류
- 입증서류 : 중대한 고장(예: 공업사수리에정증명서, 견적서, 입고증, 입고사진 등), 사고발생(사고사실증명서-경찰서 등), 폐차입고(폐차입고증-폐차장), 도난(도난사실확인서-파출소 및 경찰서)

## 자동차 종합검사 지연 과태료

-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: 4만원
-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1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 3일 초과시마다 : 2만원
- 과태료 최고한도 : 60만원

## 자동차 종합검사 장기간 미필차량 조치

-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및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영치

## 구비서류

- 자동차등록증, 의무보험가입증명서, 검사수수료

## 자동차검사소 안내

-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에 소재하는 자동차검사소 및 검사지정 정비업체
- 목포자동차검사소 : 283-5003

##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조치

-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(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)
  - 납기가 경과한 날로부터 3%의 가산금과 매월 60개월간 1.2%씩 증가산금을 과태료의 75%까지 부과하며, 국세 및 지방세 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실시
-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(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)
  -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, 60일 이상 체납 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음
  - 체납과태료 전액 납부 시 번호판 반환
- 재산 압류(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)
  - 예금, 부동산, 급여, 매출채권 등 과태료 체납자 재산을 압류 할 수 있음
  - 체납과태료 전액 납부 시 재산 압류 해제
- 관허사업의 제한(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)
  - 과태료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, 체납액 합계 500만원 이상 체납시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을 취소 할 수 있음
- 신용정보의 제공(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)
  -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업자,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
-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(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)
  - 법원의 결정으로 과태료 납부시까지 30일 범위내에서 감치(☒☒)에 처할 수 있음

기간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 체납분의 예에 따라 소유재산(부동산, 차량, 채권, 급여)압류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강제징수 합니다.

### - 행정사항

- ※ 의견진술 : 과태료 처분 전에 기회가 부여되며 의견진술은 의무이행하였음에도 행정상 오류 또는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심사후 결정 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.
- ※ 이의신청 : 과태료 부과 금액 또는 사유 등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과태료 처분청에 신청하여야 함 (기간경과시 신청불가) 이의신청을 하시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고 법원에서 과태료를 결정부와 처분하게 됩니다.

***MokPo - Si***  
***Web Contents***

